

「(재)구미시장학재단 서울 구미학숙 운영 지원 출연안」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: 2024년 10월 8일

나. 제출자: 구미시장

다. 회부일자: 2024년 10월 10일

라. 상정일자: 2024년 10월 17일

제281회 구미시의회 임시회

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 설명자: 미래교육돌봄국장 박 은 희

나. 제안이유

- 서울 구미학숙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함으로써, 수도권 소재 대학에 진학한 지역출신 인재들이 안심하고 학업에 정진할 수 있는 면학 환경을 조성하여 구미시의 미래를 이끌어갈 연어형 인재 육성에 이바지하고자 함.
- 이에 출연기관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2025회계연도 구미시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‘서울 구미학숙 운영 지원’ 출연 여부에 대하여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 제3항에 의거 미리 동의를 구하고자 함.

다. 주요내용

○ 출연 개요

- 출연기관 : (재)구미시장학재단 * 서울 구미학숙 운영기관
- 출연금액 : 150백만원(운영예산)

○ 사업 개요

- 사업명 : 서울 구미학숙 운영 지원
- 소재지 :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로32길 30(동선동2가)
- 사업기간 : 2025년 1월 ~ 12월
- 사업내용 : 서울 구미학숙 운영을 위한 인건비, 운영비 등 지원
- 운영예산 : 430백만원(출연금 150, 입학생수입 170, 전기 이월금 110)

○ 출연의 필요성

- 학숙 입학생들에게 쾌적한 주거·면학 환경을 제공하여 지역 우수인재 육성 및 학부모 경제적 부담 경감에 기여
- 인건비, 운영비(식재료비, 공공요금) 등 학숙 운영 소요예산 충당 및 안정적·효율적 운영을 위한 재정 지원 필요

라. 주요내용

○ 관계법령

-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
-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, 제20조
- 「구미시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」 제7조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박 영 훈

○ 본 출연안은

-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(재)구미시장 학재단 서울구미학숙 운영 지원을 위한 2025년도 출연금 예산 편성 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안으로,

○ 검토 결과,

- 「구미시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」 제7조에 장학기금 출연 근거가 명시되어 있으며, 지역의 우수 인재 육성을 위한 서울 구미학숙 운영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위한 것으로 서울 구미학숙에 대한 출연은 적정하다고 판단됨.
- 다만, 구미장학재단 기금의 이자수입으로 장학금과 학숙 운영비를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강화할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,
- 서울 구미학숙 입사생의 네트워크 형성의 장 마련, 멘토사업 등 구미학숙을 이용하는 입사생의 애향심과 소속감을 고취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과 지역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장학금 지원, 인턴십 기회 제공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역 사회와의 연계를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임.

4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 략

5. 토 론 요 지

- 10년 간 똑같은 관행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. 특성화 프로그램 발굴 등 운영계획 수립을 통해 구미학숙의 새로운 발전 방안이 필요함.
- 구미학숙 입사생들의 만족도 등 조사를 통해 연어형 인재 또는 지역에 대한 호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본적인 운영비 외에 구체적인 내용 추가가 필요함.

6. 소수의견의 요지: 생 략

7. 심 사 결 과: 원안가결